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12-99호 지적제조사사업 측량·조사 대행 고시 1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2-708호 2012년도 정선군 경관주택건축 지원계획 공고안 2
- 정선군 공고 제2012-709호 국외부재자신고 접수 전자우편 주소 공고 3
- 정선군 공고 제2012-711호 농지처분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4
- 정선군 공고 제2012-712호 국가기초구역 열람 공고 5
- 정선군 공고 제2012-714호 도로의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9
- 정선군 공고 제2012-716호 대부(중개)업체 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12
- 정선군 공고 제2012-717호 불법주정차 무인자동단속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15
- 정선군 공고 제2012-722호 정선군 금고지정 재공고 19
- 정선군 공고 제2012-723호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4
- 정선군 공고 제2012-724호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31
- 정선군 공고 제2012-729호 2012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계획 공고 59
- 정선군 공고 제2012-731호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0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12 - 99호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대행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건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대행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정 선 군 수

1. 지적측량수행자의 명칭 : 대한지적공사(정선군지사)

2. 사업지구의 명칭 : 건천지구

3.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지구명	위 치	필지 수	면적(㎡)	비고
건천지구	화암면 건천리 340번지 일원	224	3,178,747	

4. 지적측량수행자가 대행할 측량·조사에 관한 사항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측량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일필지조사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2-708호

2012년도 정선군 경관주택건축 지원계획 공고안

우리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가치를 창출해 나가기 위한 2012년도 경관주택건축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0월 4일

정 선 군 수

1. 지원대상 : 관내 도시지역외(녹지지역 제외) 지역에 건축하는 다음의 단독주택 중 군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하는 경관주택
가. 주거전용면적 66㎡ 이상이면서 150㎡ 미만인 [건축법시행령] 별표 1호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나.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읍자 지원되어 건축하는 농어촌주택
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정주권개발, 문화마을조성)과 관련하여 건축하는 주택
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재해복구비를 지원받아 건축하는 재해복구주택
마. 경관주택 인증신청일 현재 정선군에 거주자(주민등록상)
※ 건축물대장과 비교하여 위법건축물과 동일인(가구)에 대한 보조금 이중지원은 원칙적으로 배제함.
2. 지원금액 : 동당 5,000천원 범위내 보조
3. 지원신청
가. 신청시기 : 2012. 11. 09일 까지
나. 신청기관 : 주택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다. 제출서류 : 경관주택인증신청서 1부 (소정양식 : 신청기관 비치)
※ 결과발표 : 2012. 12. 20일 경(공문 및 전언통보 예정)
4. 문의전화 : 군청 도시건축과(☎033-560-2471~2474) 및 해당 읍면사무소

정선군 공고 제2012-709호

국외부재자신고 접수 전자우편 주소 공고

「공직선거법」 제218조4 제3항 및 제218조의5 제1항에 따라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 접수 전자우편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4일

정 선 군 수 인

1. 전자우편 주소 : joform@korea.kr
2. 접수기간 : 10. 4 ~ 10. 20

※ 전자우편으로 신고·신청하는 때에는 자신의 신고서만 할 수 있음.

정선군 공고 2012 - 711호

농지처분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무통지를 위한 청문을 실시 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송달불능(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년 10월 05일

정 선 군 수

다 음

1. 공고기간 : 2012.10.05 ~ 2012.10.22(18일간)
2. 공고내용 : 농지처분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처분사전통지 대상자 및 처분농지 현황

농지처분의무 대상농지				소 유 자		처분	반 송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 소	성 명	사유	사 유
임계면 덕암리	163	전	1,431	경기도 의왕시 약수터길13	정은주	휴경	폐문부재
정선읍 덕송리	87	전	1,98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1180번길 17-1	안정미	“	“
여량면 구절리	382	전	420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앙로13	김상구	“	이사
	385	전	635				
남면 유평리	126	전	7,167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64나길10-1(거여동)	신태희	“	이사

4. 의견제출

- 청문 및 의견제출 : 2012.10.22까지
- 청문장소 : 정선군청 농업축산과
- 의견진술방법 : 구술 또는 서면(의견제출서)
- 문 의 처 : 정선군 농업축산과 농촌개발(☎033-560-2377. FAX 033-560-2599)

5. 기타사항

- 위 기간중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거나 청문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의무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분의무 농지로 처리함을 알립니다. 끝.

정선군 공고 제 2012-712호

국가기초구역 열람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8 제3항 및 제25조의2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코자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지방 관련기관에서는 붙임 의견서 양식에 따라 2012. 10. 31까지 정선군 민원봉사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8일
정선군수

1. 국가기초구역 개요

○ 기초구역 도입배경

통계·우편 등 각 기관별 구역 설정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통계 등의 정보 공유 및 안정적인 구역관리가 곤란하여 국가 내에 공통 사용 가능한 전국단위 구역관리제도가 필요

○ 기초구역 정의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

○ 기초구역 활용범위

통계·우편 등 각 기관의 개별 관할구역을 기초구역으로 재설정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민간 물류분야 및 상권분석 등의 기준구역으로 활용

2. 국가기초구역 설정현황

시군구명	국가기초구역 할당 수	국가기초구역 수	예비번호 수
정선군	100	58	42 (26158~26199)

※ 국가기초구역 설정현황과 도로명주소 정보 등은 별첨1, 별첨2, 별첨3과 같으며 정선군 민원봉사과에 따로 출력(종이),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3. 국가기초구역 고시 예정일 : 2012. 12. 21.

4. 문의

정선군 민원봉사과 (☎033)560-2183)

《별지 1호 서식》 국가기초구역 전국 동시 고시지침

국가기초구역 설정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서

(일련번호 :)

의견제출 기관정보			
관련기관/ 부서명	/		
담당업무/ 성명	/		
연락처/ E-mail	/		
국가기초구역 설정(안)에 대한 의견			
시·도명	강원도	시·군·구명	정선군
구역번호			
국가기초구역 수정요청사유			
설정안 의견			
기존		변경 의견	

※ 도면은 홈페이지 등의 화면을 캡처하여 파일에 첨부하도록 하며 일련번호는 접수기관에서 부여합니다.

2012년 월 일

《별지 4호 서식》 국가기초구역 전국 동시 고시지침

국가기초구역 설정에 대한 주민 의견서

(일련번호 : 주민42770-)

의견 제출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연락처			
E-mail			
의견이 있는 국가기초구역			
시·도명	강원도		
시·군·구명	정선군		
구역번호			
국가기초구역 수정요청 사유			
설정안 의견			
설정안 도면			

※ 설정안 도면은 별도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일련번호는 시군구에서 작성합니다.

국가기초구역 설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며 본 의견제출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조항에 따라 귀 기관에서의 심의결과 통보에 필요한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12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정선군수 귀하

《별지 6호 서식》 의견제출 양식

국가기초구역 설정에 대한 변경 검토 의견서

(일련번호 : 42770-)

국가기초구역 설정(안)에 대한 의견			
시·도명	강원도	시·군·구명	정선군
구역번호			
국가기초구역 수정사유			
설정안 의견			
기존		변경 의견	

※ 도면은 홈페이지 등의 화면을 캡처하여 파일에 첨부하도록 하며 일련번호는 접수기관에서 부여합니다.

2012년 월 일

정선군 공고 제2012-714호

도로의노선지정(변경)에관한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 10. 09.

정 선 군 수

1. 노선지정(변경)내용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 번호	총연장		총연장 (km)	주 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정(폐지· 변경)사유
				기점	종점			도로 너비 (m)	포장 너비 (m)	
정선읍	면도	덕북선	정선 102호	여탄리 441-6	여탄리 15	13 (0.42)	덕우리 84(전)	4.0	4.0	도 로 확·포장

2.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건설방재과)

3. 사업시행기간 : 2012.10. ~2013.12.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물건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5. 설계도서, 자금계획, 지형도면 : 실음생략

○ 설계도서, 자금계획, 지형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 공람장소 : 정선군청 건설방재과

－ 도로의 노선지정도 및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건설방재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노선명 : 면도 정선 102호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	(㎡)	성명	주 소	지분	
1	정선읍 정덕우리	91-4	도	508	317	정선군			
3	정선읍 정덕우리	91-5	도	32	18	정선군			
4	정선읍 정덕우리	87-1	전	99	99	강영길 정선군			
5	정선읍 정덕우리	87-2	전	57	57	강영길 강순희			
6	정선읍 정덕우리	88-1	전	86	86	국 (재무부)			
7	정선읍 정덕우리	85-1	도	3,090	599	국 (국토해양부)			
8	정선읍 정덕우리	72-1	전	1,230	1,230	정원채			
9	정선읍 정덕우리	85-2	전	9	9	강영길 강순희			
10	정선읍 정덕우리	23-1	천	56,878	1,940	국 (국토해양부)			
11	정선읍 정덕우리	84-1	전	682	682	전찬범			
12	정선읍 정덕우리	산17-1	도	1,389	32	국 (국토해양부)			
계				64,060	5,069				

노 선 지 정 도

위 성 사 진



정선군 공고 제2012 - 716호

대부(중개)업체 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 군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중 소재불명인 대부(중개)업체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0. 10.

정 선 군 수

1. 공고의 명칭 : 대부(중개)업체 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2. 10. 17 ~ 2012. 10. 31 (15일간)
3. 등록 취소일 : 2012. 10. 09
4. 공시송달 대상업체 : 31개업체 (붙임 참조)
5. 등록취소 처분이유
 - 2012년 대부(중개)업체 일제점검 결과 사무소 소재불명 및 연락불가로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2012.09.05~10.04)를 하였으나, 공고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의신청 없음.
6. 근 거 법 령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6호
7. 행정처분내용 : 대부업 등록취소
 - ※ 직권 등록 취소된 대부업자는 향후 5년간 대부(중개)업 등록 불가
8. 이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청(정선군수)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강원도 춘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정선군청 지역경제과(☎ 560-21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 대부업체 1부.

[등록취소 공시송달공고 대부(중개)업체]

순번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비고
1	강원정선2011-대부6 강원정선2011-대부중개2	현대대부전당사	박종만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152번지 1호	소재지불명
2	강원정선2010-대부42 강원정선2010-대부중개18	대부리스전당사	박춘현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04번지 11호 1층	소재지불명
3	강원정선2012-대부6 강원정선2012-대부중개	원대부전당사	김기석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0번지 4호	소재지불명
4	강원정선2010-대부3	서울대부전당사	김정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36번지 23호	소재지불명
5	강원정선2010-대부16	못골대부25시	하명숙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13번지 못골아파트 1동 102호	소재지불명
6	강원정선2011-대부46 강원정선2011-대부중개11	해피론대부전당 사	조미옥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776번지 6호	소재지불명
7	강원정선2010-대부44	선물대부전당사	임연희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3번지 5호	소재지불명
8	강원정선2011-대부52	대부승부전당사	이영희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7번지 3호 1층	소재지불명
9	강원정선2010-대부47	콜전당사대부	강옥심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44번지 69호	소재지불명
10	강원정선2011-대부1	짱구대부전당사	유영철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44번지 7호	소재지불명
11	강원정선2010-대부35	휘닉스대부	박흥배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51번지 15호	소재지불명
12	강원정선2009-대부54	노다지대부	궁용연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56번지 102호 수정빌딩103호	소재지불명
13	강원정선2011-대부5	행운대부전당사	이동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56번지 52호	소재지불명
14	강원정선2010-대부32	강남대부전당사	이미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56번지 73호	소재지불명
15	강원정선2010-대부15	골든대부전당사	정봉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56번지 77호	소재지불명

순번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비고
16	강원정선2010-대부40	첫복대부전당사	김영신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56번지 84호	소재지불명
17	강원정선2010-대부9	VIP대부전당사	강명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6번지 142호	소재지불명
18	강원정선2010-대부51	스마트대부전당사	조진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6번지 37호 8통	소재지불명
19	강원정선2009-대부55 강원정선2009-대부중개12	뉴대신전당대부	이창영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7번지 6호	소재지불명
20	강원정선2010-대부4 강원정선2010-대부중개1	신조은대부전당사	신승용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7번지 8호	소재지불명
21	강원정선2010-대부33 강원정선2010-대부중개15	크로바대부전당사	곽승관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9번지 15호	소재지불명
22	강원정선2011-대부29	한강파이낸셜대부	장성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9번지 77호 2층	소재지불명
23	강원정선2010-대부중개4	고니대부전당사	이재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9번지 78호	소재지불명
24	강원정선2011-대부25	아이티머니대부	박종원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9번지 78호	소재지불명
25	강원정선2010-대부14	독도대부전당사	박민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73번지 6호 301호	소재지불명
26	강원정선2011-대부45 강원정선2012-대부중개1	오케이대부전당사	황종기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73번지6호 영서B/D 101호	소재지불명
27	강원정선2009-대부63	뉴신우전당사대부	김이대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77번지 30호	소재지불명
28	강원정선2011-대부3	신우대부전당사	손정현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77번지 30호	소재지불명
29	강원정선2009-대부65 강원정선2009-대부중개15	신돼지꿈대부전당사	김민희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86번지 2호	소재지불명
30	강원정선2009-대부58	보스전당사대부	안희대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97번지 11호	소재지불명
31	강원정선2010-대부2	부산전당사대부	이병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77번지 10호	소재지불명

정선군 공고 제 2012 - 717호

불법주정차 무인자동단속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정선군 사북지역의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설치 예정인 『불법 주·정차 무인자동단속 CCTV』에 대하여 설치위치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주변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강원도 정선군수

1. 행정 예고 할 내용 : 불법주정차 무인자동단속 CCTV 시스템 설치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설치 예정인 『불법주정차 무인자동단속 CCTV』에 대하여 설치위치 및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 주변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2년 10월 10일 ~ 2012년 10월 30일(21일간)

5. 불법주정차 무인자동단속 CCTV 설치 예정지 : (첨부1)

6. 의견제출 양식 : (첨부2)

- 불법주정차 무인자동단속 CCTV 시스템 설치예정 위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2012년 10월 21일 ~ 2012년 10월 30일 까지 의견서를 정선군청 도시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교통행정팀 최승기(033-560-2512)

첨부 1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장소

[illegible]

첨부 2

의견제출서

1. 행정예고 사업명		불법주정차 무인자동단속 CCTV 설치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대 상	의견대상	순위번호 번,
	대상지역	
4. 제출의견		
5. 기 타		

『행정절차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2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위치도



정선군 공고 제2012 - 722호

정선군 금고지정 재공고

정선군 금고 약정기간이 2012. 12. 31 만료됨에 따라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에 의거 차기 정선군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정 선 군 수

1. 지정방법 : 공개경쟁

2. 금고의수 : 단수금고 지정(일반 · 특별회계 및 기금)

3. 약정기간 : 4년(2013. 1. 1 ~ 2016. 12. 31)

4. 신청자격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정선군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5. 군 금고의 주요업무

- 지방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운용
- 유가증권(수입증지 등)의 출납 및 보관
- 기타 군에서 금고 업무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6. 신청절차

가. 공고기간 : 2012. 10. 15 ~ 10. 21(7일간)

나. 금고지정 신청서 교부

- 기 간 : 2012. 10. 15(1일간)

- 장 소 :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 033-560-2282)
- 열람서류 : 2009 ~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서, 관련법령 등
- 신청자료 교부 : 신청서, 요약서, 제안서 작성요령 등 교부

다. 신청서(제안서)서류 접수

- 기 간 : 2012. 10. 22(1일) 09:00 ~ 18:00시까지
- 장 소 :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 부 수 : 12부 (원본 1부, 사본 11부)
- 제출서류 : 신청서, 요약서, 제안서, 부속서류 및 우리군 요구자료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함
- 유의사항
 - 평가 항목별로 제안한 내용을 20쪽 이내로 간략하게 요약·정리한
요약서 12부를 별도 제출하시기 바람.
 - 심사 및 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 분야, 세부평가항목
내용별로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
 - 제출된 일체 서류(제안서 등)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등의 제출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고 심사
결과 내용 등을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음.
 - 제출기한이 종료되면 제출된 제안서는 반려 및 보완(수정) 불가함.

7. 평가항목(5개 항목) 및 배점기준(총점 100점)

-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35점)
- 군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15점)
-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0점)
- 금고업무 관리능력(20점)
-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추진능력(10점)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별 첨』

8. 평가방법

- 정선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제안서를 비교하여 군금고를 운영·관리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공정하게 비공개로 심의·평가함
- 평가결과 최고득점을 받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함
-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시 대면 심사도 병행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해 기관의 책임임.
-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심의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제출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을 0점 처리 또는 그에 상응한 불이익 처분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평가절차 및 평가 세부사항은 정선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9. 약정체결 및 기타사항

-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선군 금고지정 표준약정서에 의거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신·구금고간 업무 인계·인수시 구(기존)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 등에 대하여는 만기가 도래한 후 인계·인수할 수 있음.
-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해당금융기관에 있으며, 지정금고의 귀책에 의한 약정의 포기과 지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정선군에 배상하여야 함.
- 신청서는 우리군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마감 후 추가 및 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10. 제안서 제출 등에 따른 비용부담

- 금고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제안서 제출, 약정에 포함된 사항이행,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은 해당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함

11. 기타사항 : 그 밖의 추가적인 사항은 정선군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으로 (☎ 033-560-2282) 문의하시기 바람

금고지정 평가기준 및 배점기준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 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u>*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 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10점)을 평가</u>	(10)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5)	
	- BIS자기자본비율(안정성,7점) <u>*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u>	7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7점)	7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6점)	6	
	- 대손충당금 적립율(안정성,5점) <u>*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산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u> <u>*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u>	5	
2. 군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수준	소 계	15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	(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소 계	20	
	가. <u>관내지점의 수</u>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u>*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u>	(6)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7)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20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등 전산처리 능력	(5)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 사업추진 능력	소 계	10	
	가. <u>지역사회에 대한 기여</u>	(5)	
	나. <u>군과의 협력사업</u> <u>* 자치단체별 자체평가기준에 따라 운영하되, 평가기준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u> <u>으로 마련</u>	(5)	

※ 각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 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1점에서 최소 0.2점 구간 이내로 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세부항목간에 점수편차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추진능력)는 순위간 점수편차는 최대 0.5점에서 최소 0.1점 구간 내에 있어야 한다.

정선군 공고 제 2012- 723호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정선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그 품질을 보증하고, 품질 보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정선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농특산물품질관리 위원회의 설치(안 제4조)
- 농특산물 등의 품질보증(안 제5조)
- 품질보증 농특산물의 사후관리(안 제7조)
- 부정사용의 조치(안 제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599)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군 농업축산과(전화 560-24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③ 기타 참고사항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정선군수가 그 품질을 보증하고, 품질보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정선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생산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축산물·임산물(석재 및 골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농산물가공품”이란 제1호의 농산물을 주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한 가공식품·전통식품을 말한다.
3. “특산물”이란 군 내 특정한 지역에서 특징적으로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특징적으로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4. “품질보증 농특산물”이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대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정성·진품성·기능성 등 그 품질을 보증한 것을 말한다.
5. “품질보증 상표”(이하 “보증상표”라 한다)란 군수가 품질을 보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허가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작도법은 「별표1」과 같다.
6. “품질보증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이란 군수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대하여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물품의 규격 및 생산·제조·가공 등의 공정을 규격화한 것을 말한다.
7. “보증상표 사용자”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보증상표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보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정선군농특산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농특산물품질관리 위원회의 설치) ①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정선군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품질보증 농특산물의 품목선정에 관한 사항
2. 품질보증 농특산물 품목의 표준규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보증상표의 표시에 관한 사항
4. 품질보증 농특산물의 품질관리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농특산물 등의 품질보증) ① 군수는 농산물·농산물가공품·특산물의 품질향상으로 정선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제고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이에 대한 농산물·농산물가공품·특산물의 품질보증을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 농특산물의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산하는 자 또는 영농법인 등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 및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 농특산물의 대상품목·표시방법 및 절차 등 기타 품질보증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교육·훈련 등) ① 군수는 품질보증 농특산물의 품질관리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유통종사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품질보증 농특산물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품질보증 농특산물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두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산·제조·가공·유통과정에 있어서 수시로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품질보증 농특산물의 규격·품질 또는 보증의 요건 적합성 등의 여부
2. 품질보증 농특산물의 가공용 원료 원산지 및 농산물의 재배·사육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3. 품질보증 농특산물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의 시험·성분검사 의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사한 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증상표 사용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상표 유효기간) ① 품질보증 농특산물(가공품 제외)의 보증상표의 사용승인 유효기간은 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하되, 당해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품질보증 농특산물가공품의 유효기간은 사용승인 받은 날부터 보증 받은 품목의 생산을 10월 이상 중단 할 때까지로 한다.

제9조(판매지원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정부투자기관 등 여러기관 단체가 농특산물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증상표가 표시된 농특산물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권장할 수 있다.

② 품질보증 농특산물은 군에서 추천하는 농특산물 홍보·전시 판매행사 등에 우선 참여토록 할 수 있으며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품질보증 농특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를 목적으로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보증 농특산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보증상표 사용자의 준수사항) 보증상표 사용자는 다음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증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품목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 및 표시기준을 지킨다.
3. 가공품의 주원료는 정선산 농특산물을 사용한다.
4. 보증상표 사용승인 품목의 생산·제조·유통·광고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5. 보증상표 사용승인 품목의 품질 등의 하자로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의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1조(보증상표 사용승인 취소 및 신청제한) 제7조제2항 및 제10조를 이행 또는 준수하지 않은 때에는 보증상표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당해 농가 또는 영농법인·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신청을 제한한다.

제12조(부정사용의 조치) 군수는 보증상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및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물품·포장재·용기·홍보전단 등에 보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65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같은 행위로 인하여 군 보증상표의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성분분석 등 검사수수료의 부담) ① 제5조 규정에 의거 품질보증을 위한 성분분석·시험·검사 등에 소요되는 검사수수료는 신청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검사 등의 수수료는 품질 확인을 위한 검사 등에 소요되는 실험비로서 성분분석·시험·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에서 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검사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선군수 품질보증 상표 (제2조 관련)

1. 보증상표



- 참아리는 실로 정말, 참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순우리말의 참과 순박하고 성실한 정선 군민들의 삶이 녹아있는 정선아리랑의 아리와 결합된 품질보증 브랜드로,
- 전체적 표현에 있어 정선의 청정자연을 이미지화하여 "정선군수가 품질을 보증하는 최고급 농산물"이라는 명예와 찬사를 받기 바라는 소망을 표현하였음.

2. 작도법



- 품질보증 번호의 표기는 브랜드 상단에 위치 참아리 지정 서체인 윤고딕120을 이용 그리드 시스템 비례규정에 의거 정확하게 표시사용
- BI는 정확한 색상과 명도, 채도 등이 유지된 상태로 사용하되 전용색상은 제시된 4원색 규정에 의거 표현함

[별표 2]

판매촉진 및 홍보품목 제공 대상 및 범위(제9조제3항 관련)

대 상	범 위	방 법
① 농특산물 수출·입 관계자 및 임직원 ② 농특산물 유통 관계자 및 임직원 ③ 외교사절 및 우호 교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④ 유명 문화 예술인과 언론인 ⑤ 국내외 유명 연예인 및 체육인 ⑥ 기타 농특산물 판매 촉진 및 홍보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품질보증농특산물	방문, 택배 등 제공 대상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상표법

제65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③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이 법에 따른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12.2.>

제93조(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8.22, 2001.2.3>

정선군 공고 제 2012-724호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정 선 군 수

1. 규 칙 명 :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취지
 -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
 - 위원회의 회의(안 제4조)
 - 품질보증 대상품목의 선정 및 규격(안 제7조)
 - 보증상표의 사용신청(안 제8조)
 - 보증상표 사용 심사절차 등(안 제10조)
 - 성분분석 등 검사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등(안 제14조)
4. 의견제출
 -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599)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군 농업축산과(전화 560-24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③ 기타 참고사항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선군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축산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임명직 위원은 산림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정선태백 출장소장, 생산 및 출하와 관련된 기관·생산자 단체의 장, 소비자단체, 유통종사자, 농업인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품질보증 농특산물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거나 심의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품질관리원)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 농특산물의 품질관리 품목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의 품질관리원을 둔다.

② 제1항의 품질관리원은 품질보증 해당 품목의 담당부서 공무원이 되고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품질관리원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보증 대상품목의 선정 및 규격) ①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산물의 품질보증 대상품목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군수가 이를 지정·고시한다.

1. 청정이미지 등 정선군적인 품목
2. 진품여부 확인 및 정선산 원료사용이 가능한 품목
3. 품목의 거래량이 많고 상품의 차별화가 가능한 품목

② 제1항의 품목에 대한 품질보증 표준규격은 소관업무부서에서 작성하여 주무부서에서 위원회에 상정 확정하고 군수가 이를 고시한다.

제8조(보증상표의 사용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농산물가공품·특산물을 보증받고 보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농특산물(가공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수확 또는 출하하기 70일전까지 신청한다.

- 가. 품질준수각서 「별지 제2호서식」
- 나. 품질보증 신청품의 생산개요서 「별지 제3호서식」
- 다. 생산자별 조서(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라.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마.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2. 농특산물가공품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 가. 품질준수각서
- 나.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 다. 주원료를 정선산 농특산물로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라.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 개요서(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함)
- 마.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면장은 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9조(보증상표 사용심사 등) ①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품목 담당부서 공무원인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심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이를 심사하게 한 후, 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 보증상표 사용을 승인하고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기준·방법 및 보증항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농특산물의 심사는 표준규격과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의하며, 품질보증 항목 및 보증기준은 다음 각 목에 의한다.

가. 산지 : 당해 품목이 생산되는 행정구역명칭으로 보증하되, 신청자가 산·강 등 특정지역의 명칭으로 보증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보증

나. 품명 : 공인된 명칭으로 보증하되, 그 명칭이 명확하지 아니 하거나 소비자가 식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품목의 생태·형태·용도 등에 따라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으로 보증

다. 생산연도 : 당해 품목의 생산연도로 보증

라. 성분함량 : 표시하고자 하는 성분함량은 검사평균치로 보증

2. 농특산물가공품 심사는 표준규격과 「별표 2」의 심사기준에 의하며 공장심사, 품질시험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

가. 공장심사는 「별표 2」의 심사항목 및 기준에 의한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심사평가서에 의한다.

나. 품질시험은 표준규격에 따라 실시

다. 품질보증 항목은 보증번호, 보증품목 및 규격, 상표 사용자의 명칭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 주소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관계법 및 조례에 의하여 인증(보증)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중복되는 표준규격의 각종 검사와 품질시험 및 성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 품목

2.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품목

3.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품질보증 품목

4. 기타 품질이 인증(보증)된 것으로 군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품목

제10조(보증상표 사용 심사절차 등) ①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신청된 서류는 농업축산과(이하 “주무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하고 서류를 검토하여 다음 신청품목 담당부서

에 심사실시를 통보한다.

1.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 : 주무부서
 2.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 : 주무부서
 3. 임산물 및 임산물가공품 : 산림정책과
 4. 기타 특산물 등 가공품은 주무부서에서 판단, 심사실시 담당부서를 결정한다.
- ② 심사실시 통보를 받은 담당부서에서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며, 품질시험 및 성분검사는 시료채취 즉시 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가축위생시험소·산림개발연구원·강원대학교 농산물안전성전문분석실(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의뢰한다.
- ③ 시료채취는 표준규격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④ 심사실시 담당부서는 현장조사 및 품질시험·성분검사 성적의 품질보증 표준규격 및 심사기준의 적합여부를 종합 판단하여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보증상표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심사실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농특산물은 50일 이내, 농특산물가공품은 30일 이내에 주무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보증상표 사용승인서의 교부) ① 군수는 품질보증 농특산물에 보증상표 사용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3」의 품질보증번호 및 부여방법에 의하여 번호를 부여하며,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보증상표 사용승인 심사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품질보증상표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농특산물 품질보증상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품질보증번호를 기록 관리한다.

제12조(보증상표 사용승인 연장 및 재승인)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상표의 사용승인 유효기간 내에 당해 보증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않아 연장사용을 신청하는 자 및 사용승인 유효기간 내에 출하하고 조례 제10조의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착실히 지키고 종전에 신청한 동일품목 및 방법으로 재배 또는 생산하고자 재사용을 신청하는 자는 연장 또는 재승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연장승인 또는 재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품질보증상표 표시방법 등) ① 품질보증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표시사항 및 방법으로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1. 표시사항은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의 물품, 포장재, 용기 등에 원산지, 품명, 원료명, 중량,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생산자의 명칭(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연산을 표시하여야

할 농특산물은 생산연도를 표시

2. 농특산물 등 물품, 포장재, 용기 등의 표면에서 잘 보이는 곳에 조화를 이루도록 표시하되 다만, 포장재에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

② 보증상표 사용자는 사용승인 내용과 무관한 무공해, 저공해 등 이와 비슷한 의미의 용어나 기타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내용품을 과장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14조(성분분석 등 검사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등)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수수료는 성분분석·시험·검사 의뢰 시 보증상표 사용신청자가 검사기관에 직접 납부한다.

②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채취한 검사시료와 납부한 검사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뢰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 신청전에 검사시료와 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출하실적관리) 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생산자·단체·가공업체 등은 당해 품목의 연간 출하실적을 영농·경영일지 등에 기록관리하여 반기별 기준으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상반기는 7월20일까지, 하반기는 다음연도 1월20일까지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출하실적을 집계하여 상반기는 8월10일까지, 하반기는 다음연도 2월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부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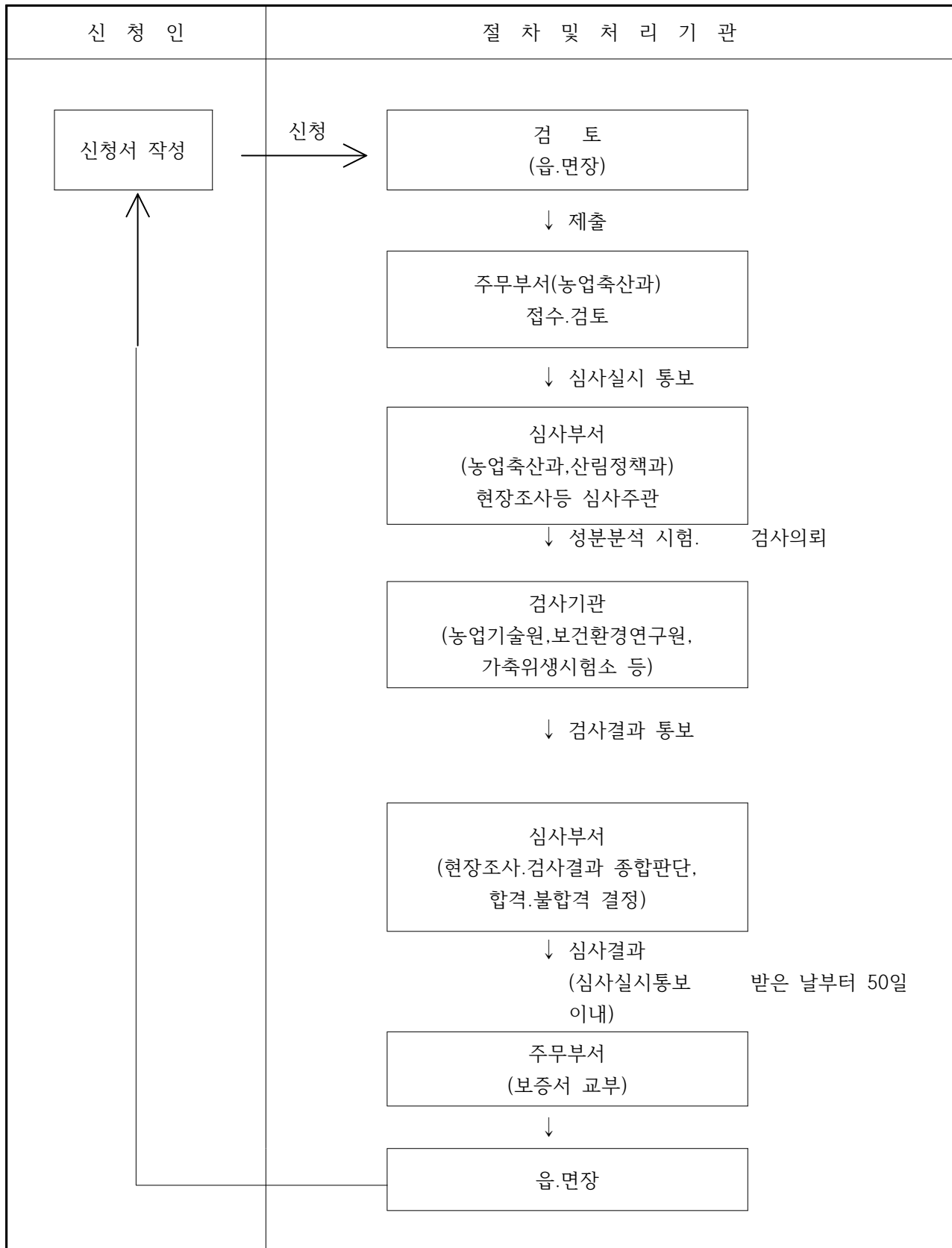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농특산물 품질보증상표(신규·연장·재)사용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자	단체명			구성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생산계획	품목(품종)		생산기간		출하기간	
	재배면적 (사육두수)		생산지역		생산계획량	
	생산(사육) 소재지					
신청내용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산물의 품질보증 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정선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품질준수각서 1부 2. 품질보증 신청품의 생산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1부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증빙서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성분분석·시험·검사 경비는 신청인 부담)

(뒷쪽)



[별지 제2호서식]

품 질 준 수 각 서

1. 품목(품종) :

2. 표시사항 :

3. 내 용

본인은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조례」 제5조, 제7조,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 표준규격과 품질보증의 품질기준을 준수하며, 출하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반품, 변상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이며, 그에 따른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아드릴 것입니다. 또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보증상표 사용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보증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 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앞쪽)

품질보증 신청품의 생산개요서

1.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 보증신청 품목(품종) 명 :

3. 재배포장별 면적(ha) 또는 가축별 사육두수(두, 수)

4. 생산계획량(톤)

5. 재배작기(사육기간)의 형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6. 토양관리실적

7. 비배관리(사육관리)실적

8. 병충해 및 잡초 방제(가축병 예방접종) 실적

※ 단체신청인 경우 생산자별 재배(사육) 내역서 첨부

(뒷쪽)

<품질보증 신청품 생산개요서 기재요령>

- 재배작기(사육기간)의 형태
 - 농산물 : 재배작기별로 과종부터 수확일까지 해당월에 표시한다.
 - 축산물 : 사육기간별로 입식부터 출하일까지 해당월에 표시한다.
- 토양관리실적
 - 농산물 : 과종전 객토, 유기물 투입, 경운, 휴경기간 등 재배토양의 관리실적을 기재한다.
 - 축산물 : 해당 없음
- 비배관리(사육관리)실적
 - 농산물 : 유기질비료 투입량, 화학비료의 사용량, 재배시기별 비배 관리실적을 기재한다.
 - 축산물 : 사육시기별 사료의 투입량, 특수방법 사육관리 등을 기재한다.
- 병충해 및 잡초 방제(가축병 예방접종)실적
 - 농산물 : 병충해 종류별, 발생시기별 방제방법에 대하여 유기농법 또는 무농약재배 방법 및 관행적인 화학합성농약을 사용하는 방법 등과 잡초방제에 대하여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방제한 실적 등을 기재한다.
 - 축산물 : 사육시기별 전염병 등 예방접종 실적 및 가축병 방제를 위한 실적 등을 기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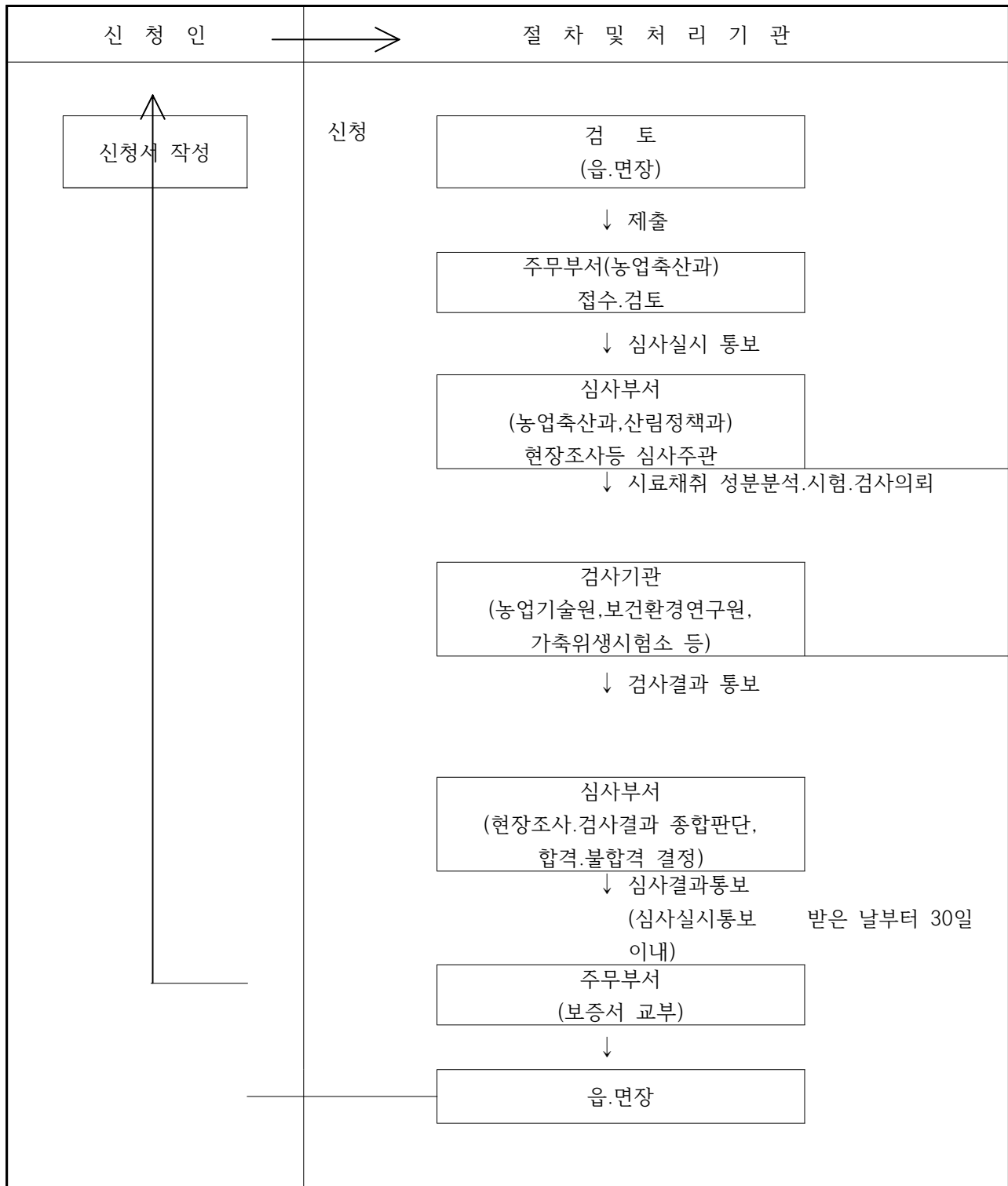
- ※ 1. 기타(임산물) 품목은 농·축산물에 준하여 작성한다.
 2. 용지 여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자세히 기재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농특산물가공품품질보증상표(신규 연장 재)사용신청서								처리기간
								40일
신청자	공 장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신 청 품 목				종류			제품단량	
제품생산 개시연도					연간생산능력			
원 료 사 용								
제 품 특 성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산물가공품의 품질보증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정선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품질준수각서 1부 2. 최근 6개월간의 제품생산·판매실적 1부 3. 주원료를 정선산 농특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공정도 및 단계 별 설명서를 말함)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5조 참조) 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성분분석· 시험· 검사경비는 신청인 부담)

(뒷쪽)



[별지 제6호서식]

농특산물품질시험 및 성분검사 의뢰서

1. 의뢰부서 :

2. 의뢰번호 : 제 호

3. 가검물명 :

4. 가검물 수량 :

5. 시험·검사항목

검사항목									
단 위									
비 고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품질시험·성분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귀하

[별지 제7호서식]

농특산물 품질보증상표 사용승인심사 종합평가서

1. 신청인(단체)현황

신청자	단체명			구성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생산 계획	품목(품종)		생산기간		출하기간	
	재배면적 (사육두수)		생산지역		생산계획량	
	생산(사육) 소재지					

2. 일반·생산·품질관리여건 심사결과

심사일자	심사항목수	평가결과			판정
		A	B	C	

※ 2항 심사 불합격 경우에는 품질시험·검사 생략

3. 품질시험결과

구분	내용							
기간								
기관								
항목								
기준치								
결과								

※ 시험·검사결과서 사본 : 첨부

4. 종합판정결과 : 합격(), 불합격()

[별지 제8호서식]

농특산물가공품 품질보증상표 사용승인심사 종합평가서

1. 업체현황

신청인	공 장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생년월일			
사업개요	시설장비	대 지	건 물		(보관창고)		운반차량
	주요생산품목				종업원수		
	신청품목	품 목	생산개시일	연 간 생산능력	연 간 생산실적	연 간 판매실적	가동율

2. 공장심사결과

심사일자	심사항목수	평 가 결 과			판 정
		A	B	C	

※ 공장심사 불합격 경우에는 품질시험·검사 생략

3. 품질시험결과

구 분	내 용							
기 간								
기 관								
항 목								
기준치								
결 과								

※ 시험·검사결과서 사본 : 첨부

4. 종합판정결과 : 합격(), 불합격()

[별지 제9호서식]

품질보증상표 사용승인 심사처리 대장

접 수		심사실시통보		신 청 내 역			결과통보(심사부서)				결 과 처 리(주무부서)					비고
번호	월일	월일	부서명	품 목	신 청 자		월일	(직)성명	심사결과판정	검사수수료	승인일자	보증번호	보증항목(기간)	사용부적처리내용	통보일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별지 제10호서식]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 상표 사용승인서

- 보 증 번 호 : 품질보증 제 호
- 제조 업체명 :
(생산조직명)
- 대 표 자 명 :
(생산자명)
- 공장 소재지 :
(주 소)
- 품 목 명 :
- 보 증 내 용 :
- 유효 기 간 :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상표 사용심사결과 당해 품질 표준규격과 심사기준에 적합하므로 위와 같이 품질보증 농특산물의 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직인

[별지 제11호서식]

농특산물 품질보증상표 관리대장

보증 번호	승 인 년월일	보증품목	업체 및 생산자					보증항목 및 표시사항	포장 단량 (kg, g)	수량 (톤)	유효 기간	처분내역 및 년월일
			업체명 (조직명)	농가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구성명 (명)	재배면적 (ha)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제 호	품 질 관 리 원 증	증명사진
소 속 :		
성 명 :		
위 사람은「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인)		

(뒤쪽)

주 의 사 항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소지한 사람은「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수 품질보증상표를 사용하는 농특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단속 할 수 있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별표 1]

농특산물 품질보증상표 사용심사기준(제9조제2항 관련)

1. 항목별 기준

	심 사 기 준	평점
1. 생산자 자질,조직 및 능력	가. 조직 . 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조직원을 충분히 확보한 견 실한 생산자 단체이거나 전업농가로 고품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자 나. 조직 . 생산경력이 1년 이상이며, 조직원을 충분히 확보한 생산 자 단체이거나 전업농어가로 고품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자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한 경우	A B C
2.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가. 지역 특산품으로서 산지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거나 특정적인 방법으로 재배하는 등 차별화되어 보증품으로서의 성가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지역특산품 또는 특정적 재배 생산물로서 유명도가 전국적 이지는 못하나 차별화가 예상되고 성가도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한 경우	A B C
3. 대외신용도	가.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3년 이상이며 대외신용 도가 매우 높은 경우 나.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1년 이상이며 대외신용 도가 대체로 높고, 유통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지 아니한 경우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한 경우	A B C
4. 생산포장 입지	가. 주변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보증 신청한 재배포장이 집단화된 지역(이하 “단지”라 한다) 이 1개소 이하이고, 자연적 재배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나. 주변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단지가 2~3개소 이하이고, 자연적 재배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한 경우	A B C
사육시설 (축사)입지	<축산물> 가. 주변에 오염(토양, 수질, 대기) 영향이 없고 가축사육의 적지 로서 생산계획량 달성을 위한 충분한 시설의 확보 및 집단화 가 이루어지고 자연적인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경우 나. 주변에 오염(토양, 수질, 대기) 영향이 없고 가축사육의 적지 로서 생산계획량 달성을 위한 충분한 시설이 확보되고, 집단 화가 미흡한 경우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한 경우	A B C
산림입지	<임산물> 가. 산림내에 천연적으로 자생하며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등 오염 및 자연적인 재해 우려가 없는 지역 나. 산림내에 임지 훼손 없이 자연재배하며 주변환경으로부터 유 해물질의 비산등 오염 및 자연적인 재해 우려가 없는 지역 다. 위의 “가,나”에 미달한 경우	A B C

5. 생산(사양) 기술수준	가.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 기술 및 기계화율이 선진 수준인 경우 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 기술 및 기계화율이 선진 수준에는 미달하나 대체로 양호한 경우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한 경우 <축산물> 가.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사육경험, 지식 및 기술이 선진 수준인 경우 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사육경험, 지식 및 기술이 선진 수준에는 미달하나 대체로 양호한 경우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하는 경우	A B C A B C
6. 생산시설 및 자재 (종자 등) 사육규모	가.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종자 등)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나.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하지는 않으나 생산작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과 자재(종자 등)를 갖추고 있거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한 경우 <축산물> 가. 판매처의 판매물량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500두 이상, 돼지고기 : 비육돈 1,000두 이상 닭고기 : 육계 30,000수 이상, 계란 : 산란계 5000수 이상 토종꿀 : 재래봉 100군 이상, 양봉꿀 : 서양봉 300군 이상 나. 판매처의 판매물량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300두 이상, 돼지고기 : 비육돈 500두 이상 닭고기 : 육계 10,000수 이상, 계란 : 산란계 3,000수 이상 토종꿀 : 재래봉 50군 이상, 양봉꿀 : 서양봉 100군 이상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하는 경우	A B C A B C
7. 자체 품질 관리 수준	가. 생산 . 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생산제품 조사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아니하고 유통중 하자상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한 경우 나. 생산 . 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생산제품 조사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아니하고 유통중 하자상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대체로 양호한 경우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하는 경우	A B C
8. 품질관리 열의도	가. 행정 . 지도 기관 및 단체의 교육 . 훈련에 적극 참여하며, 영농일지 및 생산, 출하대장 등 각종 서류를 성실히 기록하여 3년 이상 보관하고 고품질의 생산 및 규격화 . 표시적정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실행에 열성적으로 노력하는 경우 나. 행정 . 지도기관 및 단체의 교육 . 훈련에 참여한 실적이 있고 영농일지 및 생산, 출하대장 등 각종 서류를 성실히 기록하여 2년이상 보관하고 고품질의 생산 및 규격화 . 표시적정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한 경우	A B C

9.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가. 저장(건조 . 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 될 수 있는 경우 나. “가”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임대하고 있는 경우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한 경우 <축산물>	A B C
사육시설 및 기자재	가.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육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나.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하지는 않으나 사육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갖추었고, 일부 부족하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한 경우	A B C
10.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	가. 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보증품에 대한 판매처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출하 공급이 가능하고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 나. 일정한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지만 추가적인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출하 공급과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거나,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어 무리없이 출하할 수 있는 경우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하는 경우 <축산물> 가. 도시지역에 판매점(한우고기는 직매점)을 확보하고 냉장 . 숙성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인증품의 부위별 . 등급별 진열판매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나. 도시지역에 판매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확보가 가능한 경우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하는 경우	A B C A B C

2. 합격판정 기준

- “C”로 평가된 항목이 2개이상 없어야 함
- “A”로 평가된 항목이 ”B”로 평가된 항목보다 많아야 함

[별표 2]

농특산물가공품 공장심사기준(제9조제2항 관련)

1. 항목별 기준

항 목	심 사 기 준	평점
1. 공장입지	○ 주변에 오염원이 없고 쾌적함 ○ 주변환경이 보통임 ○ 주변환경이 불편함	A B C
2. 작업환경	○ 청결함 ○ 보통임 ○ 불결함	A B C
3. 자재보관 관리	○ 원료보관장소가 확보되어 있어 관리상태가 양호함 ○ 보통임 ○ 불량함	A B C
4. 제품보관 관리	○ 제품의 보관관리상태가 위생적이고 양호함 ○ 보통임 ○ 불량함	A B C
5. 제조설비	○ 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점검·보수등이 양호함 ○ 보통임 ○ 불량함	A B C
6. 주원료 조달방법	○ 자체생산 또는 계약생산으로 조달함 ○ 생산자의 생산품을 직접 구입하여 사용함 ○ 상인등으로부터 구입하거나 납품을 받아 사용함	A B C
7. 주요공정 관리	○ 주요공정을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보통임 ○ 불량함	A B C
8. 용수관리	○ 음용수의 수질상태가 양호함 ○ 보통임 ○ 불량함	A B C
9. 종업원의 위생관리	○ 종업원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위생복착용 등 개인의 위생관리 상태 양호 ○ 보통임 ○ 불량함	A B C
10. 폐기물 처리상태	○ 주변을 오염시키거나 방치함이 없는 등 처리상태가 양호함 ○ 처리상태가 미흡함 ○ 처리상태가 불량함	A B C
11.유통체계	○ 자체 판매망을 확보하여 유통상의 변조 등 부정의 소지를 최소화함 ○ 자체 판매망과 일반 시중 판매망을 병행함 ○ 자체 판매망이 없이 일반 시중 판매함	A B C
12. 제품의 포장 및 표시	○ 포장 및 표시가 적정함 ○ 다소 미흡함 ○ 불량함	A B C

2. 합격판정 기준

- “C”로 평가된 항목이 2개이상 없어야 함
- “A”로 평가된 항목이 ”B”로 평가된 항목보다 많아야 함

[별표 3]

농특산물 품질보증 번호부여(제11조제1항 관련)

1. 보증번호

품질보증연도	보증품목지정순위	품질보증번호
○ 농특산물의 품질을 보증한 연도 “예” 2012년도 ⇒012	○ 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한 보증품목 지정 순위 “예” 1. 사과 ⇒01	○ 연도에 관계 없이 품목별로 품질보증한 순서에 의한 계속 일련번호 “예” 7번째 보증 ⇒07

2. 보증번호 부여방법

가. 보증표시 및 번호 부여순서

- 1)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표시 : 품질보증
- 2) 품질보증연도 : 012(2012년), 013(2013년), 014(2014년)
- 3) 품목지정번호 : 01(고시된 보증품목 지정순위)
- 4) 품질보증번호 : 07(품목별 보증 일련번호)

“예” 품질보증 제012-01-07호

나. 보증번호를 이미 부여 받은 업체의 유효기간 연장 또는 재보증시에는 기 부여한 보증번호를 계속 부여

“예” 1) 연 장 : 기부여 제012-01-07호 ⇒ 제012-01-07호

2) 재연장 : 기부여 제012-01-07호 ⇒ 제013-01-07호(보증연도가 다를 경우)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정선군 공고 제 2012 - 729호

2012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계획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검사대상(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관수동저울, 접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이동식축중기
2. 검사일정

읍·면별	검사일정 및 시간	장 소	비고
정 선 읍	2012. 11. 08 (10:00 ~ 16:00)	정선실내체육관(역전)	
고 한 읍	2012. 11. 09 (10:00 ~ 16:00)	고한읍사무소	
사 북 읍	2012. 11. 12 (10:00 ~ 16:00)	사북읍사무소	
신 동 읍	2012. 11. 13 (10:00 ~ 12:00)	신동읍사무소	
	2012. 11. 13 (14:00 ~ 16:00)	함백출장소	
화 암 면	2012. 11. 14 (14:00 ~ 16:00)	화암사무소	
남 면	2012. 11. 14 (10:00 ~ 12:00)	남면사무소	
여 량 면	2012. 11. 15 (09:30 ~ 12:00)	여량면사무소	
북 평 면	2012. 11. 15 (14:00 ~ 16:00)	북평면사무소	
임 계 면	2012. 11. 16 (10:00 ~ 16:00)	임계면사무소	

3. (정기검사연기)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정기검사 종료일 10일 이내 정기검사연기신청서를 해당 읍·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신청서 읍·면 산업개발부서 비치)
4. (소재장소정기검사)계량기가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검사전 소재장소정기검사신청서를 해당 읍·면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신청서 읍·면 산 업개발부서 비치)
5.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산업경제과(560-2357), 읍·면 산업개발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1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공고 제2012-731호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2. 개정취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을 규정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마.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처리방법,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제16조)
- 바. 발생억제에 대한 지도·점검,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제1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전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 및 문의전화

－ 우편제출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녹색환경과(우편번호 233-804)

－ 전화 033-560-2336, FAX 033-560-2589

붙임 :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객석, 객실)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영업 중 영업장(객석, 객실)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차류, 제과류, 아이스크림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따로 수거하기 위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해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다량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등의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다량배출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발생억제)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적절한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공고하거나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별 발생억제를 위한 물품 및 설비, 보조금, 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방법을 작성하여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제출하여야 한다.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영업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는 고객이 식사량을 고려하여 주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형찬기와 복합찬기를 활용하여 적절한 양의 반찬을 제공하는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을 개설·운영하

는 자는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적 구매의 홍보 등을 통해 조리 이전 단계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 ⑤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징수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나 전용수거용기로 시행한다.

- ②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 ③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종량제봉투나 납부필증 판매로 징수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게를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하여 징수할 수 있다.
- ⑤ 종량제봉투나 납부필증 판매가격은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배출 방법) ① 군수는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별표 1과 같이 한다.

-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장소·용기로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혼합배출 해서는 아니 되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나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제11조(종량제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 또는 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한다.

- ②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해야 한다.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다르게 하고, 업소명을 표기할 수 있다.

제12조(공동보관시설 등 설치)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공동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재활용을 위한 공동보관시설 또는 공동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보관시설 또는 공동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재활용을 위해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된 전용운반차량과 운반함을 이용하여 악취의 발산과 오수의 유출을 막아야 하며, 전용운반차량과 운반함은 세척·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게 한 자의 시설이 관할구역 외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을 정지되는 등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 체결한 군수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처리에 드는 실제 비용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활용을 대행하게 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가 건조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한 후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지정된 장소·방법·용기로 배출하여야 한다.
 - 가. 단독 또는 공동 가열건조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 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변경) 신고서)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위탁 10일전까지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내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다량배출사업자는 별지 제2호 서식(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을 작성하여 다음 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한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나. 발생억제 방안을 변경한 경우
 -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행·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6. 제5호에 따른 변경신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변경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 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다.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2호에 따라 위탁재활용의 경우)
 - 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필증

제17조(발생억제 등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 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이행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3.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8조(발생억제 등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2조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와 제16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해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고, 재활용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재활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8조에 따른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3(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8에 따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품목별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제10조제1항 관련)

구 분	음식물류 폐기물 (음식물종량제 봉투 및 전용용기에 넣을 수 있는 것)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물질 (음식물종량제 봉투 및 전용용기에 넣을 수 없는 것)
공 통	○ 가축이 먹을 수 있는 것 - 식품쓰레기 - 조리 전·후 음식물 찌꺼기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음식물종량제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가축이 먹을 수 없는 것 ※ 비닐, 병뚜껑, 패각류, 복어내장, 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게 포장되어 재 활용 및 가축이 먹을 수 없는 물질
일 반	○ 밥 등 곡류, 김치 등 반찬류, 된장, 고추장 등 장류, 빵, 과자 ※ 소금성분이 많은 고추장, 된장, 간장, 김치류 등은 물로 행구어 최대한 물기 제거 후 배출	○ 비닐, 왕겨,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손가락, 플라스틱, 끈, 고무장갑, 쇠붙이, 손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등 마르고 딱딱한 물질
채소류	○ 모든 채소류 - 통무, 통배추, 통호박, 통수박 등은 깎두기 형태로 썰어서 배출 - 파, 미나리, 무청, 옥수수알맹이 - 양파, 생강, 감자, 고구마 등의 껍질	○ 고추대, 고추씨, 마늘대, 옥수수대, 옥수수껍질, 생강껍질 ○ 통무, 통배추, 통호박, 통수박 ○ 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과일류	○ 모든 과일류 - 파인애플 등 부피가 큰 것은 깎두기 형태로 썰어서 배출 - 사과, 배, 복숭아, 참외, 귤 등의 껍질	○ 호두, 밤, 도토리, 코코넛, 땅콩,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 복숭아, 자두, 살구, 매실, 감 등의 씨
육 류	○ 모든 육류의 살점, 지방부분	○ 소, 돼지, 닭 등의 뼈와 털
어패류	○ 생선의 대가리, 뼈, 내장	○ 조개, 꼬막, 소라, 전복, 굴, 멍게 등 패류의 껍데기, 복어내장 ○ 게, 가재, 새우 등 갑각류의 껍데기
알껍질		○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등의 껍데기
찌꺼기		○ 각종 차류(녹차 등 티백) 찌꺼기 ○ 한약재 찌꺼기

※ 비고 :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물질은 일반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한

즉 시

신고인	①상 호(명 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 명(대표자)			④생 년 월 일			
	⑤주 소(사업장)			(전화 :)			
⑥사업장 규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영업장면적 : m ²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m ²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m ²						
	☐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		kg/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							
⑨자가처리계획	⑩ 건 조 처 리				⑮ 건조 부산물 처리		
	⑪ 처리방법	⑫ 처리능력	⑬ 설 치 신고일자	⑭ 처 리 량	⑯ 부산물 발생량	⑰ 처리방법	처리자
		kg/일		kg/일	kg/월		
⑱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kg/월						
⑲대행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	대행 재활용량	대행 계약비용	대행 업소명	업 종	재활용방법	대행업소 주소·전화	
	kg/월	원/kg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정선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

상 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전화 :)	
처리구분	처리예상량	처리방법	설 치신고일	재활용장소	대행업소명	대행업소 주소(전화)
자가감량처리	kg/일					
자가재활용	kg/월					
대행재활용	kg/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정선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인)

(뒷쪽)

<작성요령>

- ⑦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1일 300kg 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⑧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예시)

집 단급식소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시장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 ⑪ 처리방법은 1) 가열 또는 건조 2)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 ⑫ 처리능력은 감량시설의 용량을 적습니다.
- ⑭ 처리량은 실제 처리하는 양을 적습니다.
- ⑮ 부산물 처리는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 부산물의 양과 처리방법 등을 적습니다.
- ⑮ 자가재활용계획은 자체적으로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 ⑮ 대행재활용계획은 재활용업자에게 대행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으며, 대행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붙여서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 kg)

연월일	발생량	자가처리			재 활용			
		자가 처리방법	자 가 처리량	처리량 누 계	재활용량	재 활용 방 법	재 활용자	누 계

<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적고,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적습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대행재활용한 경우에 적고,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적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적고, 대행재활용하는 경우 대행업소명을 적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제 신 출 고 자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주소(사업장)	(전화:)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객석·객실 합계면적 : m ²
	☐ 대규모점포: 사업장면적 m ²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m ²
	☐ 호텔·콘도: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 발생량	kg / 년
-----------------	--------

발생억제방법	
--------	--

처 리 실 적

자가처리	자가처리 방법	처리시설 능 력 (kg/일)	연 간 처리량	부산물처리		
				부산물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자

재 활 용	자가재활용의 경우		대행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일)	재활용 방법	대행량 (kg/일)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전화

「정선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